

의안
번호

467

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04. 18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양 순 임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467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03. 28.

라. 회부일자 : 2025. 04. 10.

2. 제안이유

- 「스포츠클럽법」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,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며, 스포츠클럽 지원,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정의 규정에 “학교체육시설” 신설(안 제2조제4호)
- 나.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·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환수 조문을 신설함(안 제7조, 안 제8조)
- 라.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스포츠클럽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5. 04. 03. ~ 2025. 04. 08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성북구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스포츠클럽 지원과 보조금 환수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내용
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안 제9조에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“학교체육시설”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구청장이 「스포츠클럽법」 제5조항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활동지원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7조(지도·감독)제1항 및 제2항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과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·감독을 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요구서류 제출 기한을 명시함.
- 안 제8조(환수)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수 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9조(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)는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.
- 그 밖에 개정사항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「스포츠클럽법」 제5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활동지

원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성북구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,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보조금에 대한 환수 절차 및 지도 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.